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72호로 2025년 8월 14일 우경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사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상 인정 요건이 협소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육이 어려운 가정은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채, 결국 ‘유기’라는 불법적 선택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육포기 인정 사유의 구체적 예시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이 적법한 보호체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나. 소요경비 면제 조항 신설(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제도”는 원치 않더라도 동물을 유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동물 보호 비용에 관한 소요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고자 발의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7. “사육포기 동물”이란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u> |

- 안 제2조에서는 “사육포기 동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정의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¹⁾을 준용함.

1)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신설) | <p>제9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절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p> |

- 안 제9조에는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사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는 「동물보호법

⑤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각호(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하였음.

- 이에 더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6호에 따르면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명시함.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신설></p> | <p>제14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은 <u>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2항</u>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u>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②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

- 안 제14조에서는 보호에 따른 소요경비 청구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2)의 비용 면제 규정을 단서 규정에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3항3)에서 규정되어 있던 비용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 비용을 면제하고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계층이 사육을 포기할 경우라도 동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인수 대상 기준 및 면제 조건이 법제화됨으로써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행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사육 포기가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본 조례에 명확한 조건과 절차의 규정으로 인해 사육 사각지대를 줄여서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지며, 집행기관에서는 인수된 동물의 수용 공간,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운영 기반이 충분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동물보호법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⑤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